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527583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6. 9. 22.

판결 선고2016. 10.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04,302원 및 그중 82,636,212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9.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2014. 4.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4. 10. 접수 제136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3. 16. 피고 주식회사 A와 위 피고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을 85,000,000원의 범위에서 2011. 3. 16.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①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원고가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와 같은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상의 보증기한을 매년 1년씩 연장하여 오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10. 15.경 위 피고회사의 이자연체, 2015. 4. 14. 경 위 피고회사의 원금연체로 인한 각 신용보증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고, 2015. 7. 16.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82,636,2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5. 7. 16. 대위변제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정한 상환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추가보증료는 359,250원이며,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825,700원이었는데 그중 216,860원은 회수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83,604,302원(=대위변제금 82,636,212원 + 추가보증료 359,250 + 보전비용 825,700원 - 회수한 보전비용 216,86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82,636,2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7.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 9. 9.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04,302원 및 그중 82,636,212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9.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D은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의 2014. 4.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13675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피고 B의 부로서 위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누나이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공시지가 1,939,8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 안성시 E 토지, 공시지가 52,868,7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인 F 토지,

55,000,000원 상당의 안성시 G 소재 다세대주택 202호, 150,000,000원 상당의 고양시 덕양구 H연립주택 디동 106호 등, 합계 259,808,5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81,345,000원 상당의 구상채무, 국민은행에 대한 98,000,000원 상당의 채무, I에 대한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피고 D의 남편 J 또는 피고 D에 대한 124,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 피고 B에 대한 36,000,000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389,34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실제경영자인데, 갑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는 피고 주식회사 A나 위 피고회사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에게 압류, 가압류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으면 대위변제 전이라도 원고에게 구상권을 인정하는 사전구상권에 관한 약정(약정서 제5조)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C 소유의 안성시 G 소재 다세대주택 202호에 관하여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1580호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고, 2014.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연립주택 디동 106호에 관하여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1580호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고,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의 실제경영자 피고 C의 재산에 대한 2013. 4. 26. 가압류결정, 2014. 3. 6. 강제경매개시결정, 2014. 3.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음으로 인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피고 C도 원고의 사전구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전구상권은 2014. 4. 9.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여 그 채권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 D의 선의

피고 D은 피고 C에게 2005. 3. 31.까지 빌려준 124,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사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는바,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136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성진

별지